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정하며,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당사자

서비스 대상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대상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치매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본 기관에서 서비스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②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 ③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대상자는 0%, 의료대상자 6%, 감경대상자 6% 또는 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분		비율(%)	내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91%(감경) 94%(감경, 의료) 100%(기초)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 부담금	보험료 (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6%(감경,의료)	보험공단이 91%,94%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이 9%,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이 0%임

- ④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⑥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⑦2021년 장기요양급여 표준수가표

1.월 본인한도액(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2.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원)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단, 평일 오후 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3.방문목욕 급여제공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제공시간	60분이상	60분이상	60분이상
수가(원)	75,450	68,030	42,480

구비서류

계약체결 시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품확인서 사본 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서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대상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대상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대상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대상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계약해지

- ①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②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③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동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면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